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 월 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입목벌채(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허가)에 의한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의 범위에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추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목벌채 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의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개정)

-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 2) 입지현황, 산림재해 발생 현황 등이 포함된 기본조사와 작업원 안전관리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임의벌채 범위에 추가(안 제47조 개정)
자동차 및 보행자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도로변 산림 안의 입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6. 5. 00. ~ 6. 00.),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를 “벌채예정수량조사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1. 사업계획서(기본조사(임상(林相), 수계(水系), 도로, 건축물 등 입지 현황,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림사업 현황 등), 입목벌채의 목적 및 사업내용, 작업원 운영 및 안전관리,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

측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실측도 1부”를 “실측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를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로 한다.

1. 사업계획서(기본조사(임상(林相), 수계(水系), 도로, 건축물 등 입지현황,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림사업 현황 등), 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및 사업내용, 작업원 운영 및 안전관리,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복구계획서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입목별채등의 목적, 사업기간”을 “기본조사(임상(林相), 수계(水系), 도로, 건축물 등 입지현황,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림사업 현황 등), 입목별채·굴취의 목적 및 사업내용, 작업원 운영 및 안전관리”로, “한다) 1부”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를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로 한다.

2. 벌채구역도·굴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 또는 굴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제4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 연결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확인된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입목높이(樹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 ----- ----- ----- ----- ----- ----- ----- ----- ----- ----- ----- ----- ----- ----- ----- ----- ----- <u>. 다만, 신청인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u>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1. 사업계획서(기본조사(임상(林相), 수계(水系), 도로, 건축물 등 입지현황,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림사업 현황 등).

<신 설>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2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5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입목벌채의 목적 및 사업내용, 작업원 운영 및 안전관리,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3. -----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삭 제>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①-----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 다만,
신청인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직
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기본조사(임상(林相), 수계(水系), 도로, 건축물 등 입지현황,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림사업 현황 등), 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및 사업내용, 작업원 운영 및 안전관리,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
-- 실측도

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u>실측도 1부</u>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u>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u> <u><신 설></u> 3. 복구계획서 1부 4. (생 략)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① (생 략)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굴취 구역 및 벌채·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3. ----- -- <u>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u> 4. 복구계획서 <u><삭 제></u> 5. (현행 제4호와 같음) <u><삭 제></u>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 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신 설>

1의2. (생략)

----- . -----

----- . 다만, 신청인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사
항증명서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
록 해야 한다.

1. -----기본조사(임상(林相), 수계(水系), 도로, 건축물 등 입지현황,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림사업 현황 등), 입목 벌채·굴취의 목적 및 사업내용, 작업원 운영 및 안전관리-- 한다)
2. 벌채구역도·굴취 예정구역도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 면적 또는 굴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4.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u>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u> 1부 3. (생략) ③·④ (생략)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② (생략)	3. ----- -- <u>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u>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 1. ~ 11. (현행과 같음) 1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 연결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확인된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입목높이(樹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앞쪽)

[] 입목벌채
(변경)허가신청서
[] 임산물 굴취·채취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전자우편			
산림 소재지						
지적	m ²	구역면적	m ²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m ²	
신청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 (m ³ ,본,kg)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 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기본조사(임상(林相), 수계(水系), 도로, 건축물 등 입지현황,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림사업 현황 등), 입목벌채의 목적 및 사업내용, 작업원 운영 및 안전관리, 입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다.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입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입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기본조사(임상(林相), 수계(水系), 도로, 건축물 등 입지현황,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림사업 현황 등), 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및 사업내용, 작업원 운영 및 안전관리, 입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다.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라. 복구계획서 마.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입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입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입목벌채 및 입산물 굴취·채취의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 방법

- ① “지적” 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 ② “구역면적” 란에는 지적 중에 제한지역, 준치지역, 실제 입목벌채 지역을 포함한 입목벌채등의 전체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준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 ④ “종류” 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입목수확, 숲가꾸기, 수종갱신, 산불·산림 병해충·산사태 피해목,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입목수확), 벌채(산불피해목)
- ⑤ “방법” 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솜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 ⑥ “용도” 란에 벌채는 제재목, 합판, 단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집성재, 목재칩, 목재펠릿, 숯,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목), 벌채(목재칩)
- ⑦ “신청수량” 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입목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kg)를 적습니다.
- ⑧ “잔존 면적·본수·군상수” 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앞쪽)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전자우편

산림소재지	
-------	--

지 적	m ²	구역면적	m ²	벌채 또는 굴취 면적	m ²
-----	----------------	------	----------------	-------------	----------------

신고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m ³ , 본)	

벌채 또는 굴취 기간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기본조사(임상(林相), 수계(水系), 도로, 건축물 등 입지현황,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림사업 현황 등), 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 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의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① “지적” 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 ② “구역면적” 란에는 지적 중에 제한지역, 존치지역, 실제 입목벌채 지역을 포함한 입목벌채등의 전체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 ④ “종류” 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입목수확, 숲가꾸기, 수종갱신,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 피해목,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입목수확), 벌채(산불피해목)
- ⑤ “방법” 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굴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벌채(모두베기)
- ⑥ “용도” 란에 벌채는 제재목, 합판, 단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집성재, 목재칩, 목재펠릿, 숯,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목), 벌채(목재칩)
- ⑦ “신청수량” 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입목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kg)를 적습니다.
- ⑧ “잔존 면적·본수·군상수” 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4) 481 - 4189